

#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본인은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로부터 보험계약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 제1조 (정의)

- (1)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 제2조 (외화대출의 용도제한 및 자료제출)

- (1) 계약자는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9조에 따라 본 약정에 의한 외화대출을 각호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①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의 자금
  - ②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
- (2) 계약자는 회사가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10조에 따라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화대출의 경우에 한함)

## 제3조 (보험계약대출기간, 원리금상환)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 내로 하되, 본인은 언제라도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단, 2005.06.01 이후 판매상품은 보험료미납으로 해지된 상태에서는 상환 불가함.)

## 제4조 (대출이자납부 등)

- (1)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 (2)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 해당일(이하 "이자 납입일"이라 한다)에 납입하며,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응당일에 월복리로 부리하여 미수이자에 부과한다.
- (3) 이자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영업일에 이자를 납입할 수 있다.
- (4) 이자납부일 이전에 이자를 납부한 때에는 이자납부일을 기준으로 선납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할인한다.
- (5) 은행자동이체로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이체일을 이자납부일로 하며, 회사는 다음 이체일에 재청구 한다.
- (6) 보험계약대출 실행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이자를 수납하여야 한다.

### 제5조 (즉시변제)

- (1)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한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①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 ② 2002.08.01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③ 2002.08.01 부터 2005.03.31 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 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④ 2005.04.01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 ⑤ 제2조에 의한 용도제한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한 때
- (2) 제1항 2호,3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해지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본인은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 (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본인이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한다.

### 제7조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단, 계약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 표시인 경우에는 배당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 (인지세의 부담)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회사가 부담한다.